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942

2025년 9월 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8월 11일, 김재진 의원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14일

다. 상정일자: 제33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5년 9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재진 의원)

가. 제안이유

○ 한강버스는 서울시의 핵심 수상 교통사업으로, 최근 한강버스 선착장 등 관련 인프라의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음. 그러나 선착장 등 수상 교통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리 규정이 미비하여, 조례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버스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한강버스 선착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7호 신설).

○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대책 마련 및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3조제5항, 제6항 신설).

○ 사업자의 책무에 시설의 성능 저하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에 관한 성실 대응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3항 신설).

○ 사업자의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8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4. 검토보고 요지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버스의 본격적인 운항에 앞서 선착장 등 수상 교통시설의 정의와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은 물론,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과 수상 교통체계의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안 제2조제7호는 “한강버스 선착장”의 정의를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관련 규정의 해석과 실행에 있어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제5항과 제6항은 한강버스 운영과 선착장 관리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하는 것으로 ‘약자와의 동행’ 및 시민참여 행정(정책)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시민 의견 수렴 방식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안 제4조제2항은 선박과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 공공안전의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됨.

○ 안 제8조제3항은 시의 지원 금액 규모와 방식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방만 경영을 막고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것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향후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에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강버스 선착장”(이하 “선착장”이라 한다)이란 한강버스의 안전한 접안 및 승선·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로 승객의 대기, 편의시설, 문화공간, 육상교통 연계 등을 위한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수상교통 거점을 말한다.

제3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한강버스 운영에 있어서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⑥ 시장은 한강버스 운영 및 선착장 관리 등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마련하고,”를 “마련하고,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자는 한강버스 운항에 이용되는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원인 규명 및 책임소재에 관한 시장의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재정지원”을 “시장은 재정지원”으로, “사항은”을 “사항에 관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 내용에는 사업자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 6. (현행과 같음) 7. “한강버스 선착장”(이하 “선착장”이라 한다)이란 한강버스의 안전한 접안 및 승선·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로 승객의 대기, 편의시설, 문화공간, 육상교통 연계 등을 위한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수상교통 거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④ (생략) <신 설> <신 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한강버스 운영에 있어서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⑥ 시장은 한강버스 운영 및 선착장 관리 등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대중교통으로서 편의와 안전성이 증진되도록 한강버스 운항에 다양한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마련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 마련

하고,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하고,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
<신 설>	② 사업자는 한강버스 운항에 이용되는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원인 규명 및 책임소재에 관한 시장의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8조(재정의 지원) ① (생 략)	제8조(재정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정지원 금액 및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자와 제22조의 협약을 통해 정하고,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 ---------- 사항에 관하여 ----------.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 내용에는 사업자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대상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제8조(재정의 지원)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의견 청취·모니터링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과 타당성조사 및 경제성분석을 통한 투명성 제고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참고자료로 한강버스 이용 모니터링 및 운영 개선방안 수립 용역 관련 내용을 첨부함(붙임)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선희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이설화 ☏ 02-2180-7952 e-mail : sseol789@seoul.go.kr

〔붙임〕 한강버스 이용 모니터링 및 운영 개선방안 수립 용역 과업내용서 중 관련 내용 일부 발췌

1. 모니터링

가. 한강버스 운영 및 이용객 관련 종합 모니터링

○ 한강버스 및 부대사업시설에 대한 시간대·시기별 수요량

○ 나이, 성별, 연령 등 구간별, 시간대별 이용객 특성

○ 이용객 주요 이용 동선(O/D) 및 타 대중교통수단 연계(환승) 현황

○ 선착장 접근 방식(버스, 지하철 따릉이 등) 조사, 분석

○ 이용객 만족도, 건의 및 개선 사항 등 의견 청취·모니터링

○ 이외 한강버스 운영 개선을 위해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기타 모니터링

※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설문조사 문항(설문 순서, 문장 형식, 내용, 설문 길이 등)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작

나. 모니터링 결과 분석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데이터 가공 및 분석 등 통계자료 작성

※ 적정 통계 산출 방식 검토 및 「도로 교통량 조사 지침」 등 관련 가이드라인 준용

○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한강버스 및 부대사업시설 운영 개선방안 도출

2. 운영 개선방안 제시

가.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기반으로 한강버스 및 부대사업시설에 대한 구체적 운영 개선방안 제시

나. 운영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단기·장기 실행 계획 수립

다. 한강버스 운영사와의 운영 및 개선 방안 도입 관련 협의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경제성분석 실시

가. 선착장 확대 계획에 따른 후보지 별 공사비 등 관련 비용 추계

·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산출 근거 및 비용 제시

· 적정 공사 기간, 공사비 및 재원 조달 계획, 투자 우선순위, 연차별 공사 시행 계획, 도시관리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등

※ 공사 기간과 공사비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서울형 품셈'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과소 산정 방지)

※ 사업비 산출 시에는 최근 유사 공종 준공 사례 조사·분석 결과, 실적 공사비를 비교·검토하여 산출

※ 인건비, 자재값 상승 등을 고려한 적정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시기별 사업비를 제시하고, 전문가(전문기관) 자문(검증) 등을 통해 적정 사업비 책정

· 유지관리비 산출 시 「항만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KDI, 2014), 「하천 유지 · 보수 매뉴얼」(환경부, 2024) 등 참고

· 추후 설계 시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적용 필요성·가능성 검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건설자재 등 검토 시 친환경건설자재(녹색제품) 사용 가능 여부 파악

나.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와 이용자 편익을 비교한 편익비용비(B/C), 내부수익률(IRR), 및 순현재가치(NPV) 등 산출

※ 공공사업 경제성 평가 기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적용

다. 광고,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 수익 확보 방안 검토

라. 기타 타당성조사 및 경제성분석에 필요한 사항